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912호
-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일자 : 2021년 10월 15일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2.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디자인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 문화 확산 및 디자인 산업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해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나.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DDP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에 관한 추가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사무명 :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 2)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3) 사무내용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운영
- 서울디자인지원센터의 운영
- 디자인정책 연구사업과 디자인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조사 연구 및 전시·보급
- 디자인 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과 그 보급
- 디자인의 국·내외 교류사업
- 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나. 출연 개요

1) 출연방법 : 市 예비비 사용

2) 금번 출연금액 : 199,736천원

- 총 출연금액 : 21,175,225천원 (기정 출연금액 : 20,975,489천원)

※ 제4차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기간 도래일('21.12월)에 맞춰 감면분에 대한 예비비 사용 계획 수립 예정으로 출연금액 조정될 수 있음

3) 출연 필요성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입은 DDP에 입점한 소상공인 등에 6개월간 임대료 50% 및 공용관리비 감면 예정이나,
- DDP는 개관 아래, 시설 임대료, 대관료 등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 및 시설물 관리비 등 기본 운영비용을 충당(재정자립)해온 기관으로
- 코로나19 장기화로 방문객 감소, 대관취소 등으로 자체수입이 감소한 DDP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감면한 임대료 및 관리비 손실 보전액에 대한 예비비 사용 필요

다. 서울디자인재단 기관 개요

1)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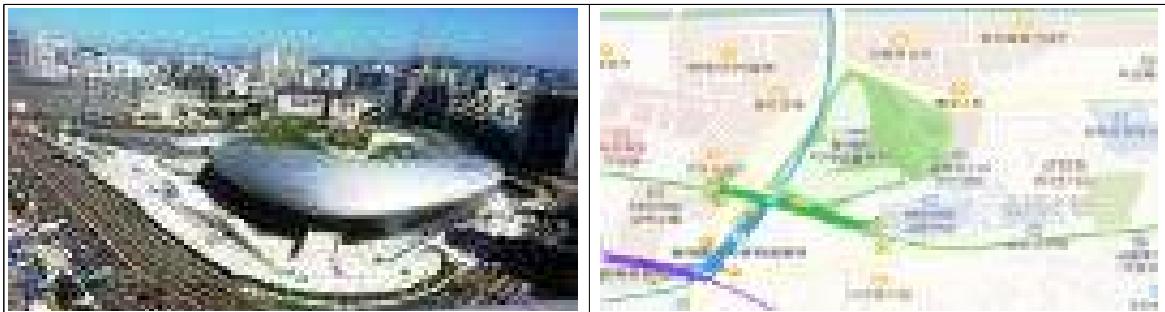
2) 규모 : 대지 $3,191 m^2$, 건물 $5,937 m^2$ (9층 건물)

3) 전경 및 위치도



라. 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개요

- 1)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을지로 281(옛 동대문운동장 부지)
- 2) 규모 : 총 면적 $86,574m^2$, 지상 4층, 지하 3층
- 3) 개관일시 : 2014. 3. 21.
- 4) 전경 및 위치도



5) DDP 시설 현황 : 5개 공간 21개 시설

알림터	알림1관, 알림2관, 국제회의장, 복합문화공간(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컨벤션 시설로 창조산업의 런칭 패드• 디자인·패션산업 신제품 발표회, 콘서트, 시사회, 공연 등
배움터	디자인박물관, 디자인전시관, 디자인돌레길, 디자인놀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자인 문화의 전통과 창조성을 세계 미래로 전파·전승• 디자인·패션 전문 전시, 어린이 디자인체험 등
살림터	디자인샵, DDP스토어, 살림1관(D-숲), 살림2관(크레아), 화상스튜디오, UD플랫폼, 디자인 라이브러리, 잔디 사랑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 창의 아이디어 교류·공유, 창조산업 지식·정보 제공• 디자인 비즈니스 프로모션 및 플랫폼, 시민 디자인·브랜드 체험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이간수문전시장, 갤러리문, 동대문역사관, 동대문운동장기념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자인·문화 전시·이벤트, 동대문 기반 패션디자인 소개• DDP 부지의 역사적 기억 전승을 위한 전시
디자인장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객의 만남과 휴식, 편의지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산관리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약정한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DDP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 규모 : DDP 입점업체 10개소

(단위 : 천원)

감면 대상	감면 임대료(A) (사용료50%)	감면 관리비(B)	총액(C) (C=A+B)
10개소	161,440	38,296	199,736

〈임차료, 공용관리비 감면 세부현황〉

(단위 : 원)

업체명	임차료 감면액	관리비 감면액	업체명	임차료 감면액	관리비 감면액
노태그 (디자인숍)	7,751,830	12,24,194	카페드파소니아 (카페)	3,9345,753	4,269,751
티티알1 (디자인숍)	9,974,495	1,020,162	롤링핀 (카페)	12,065,053	2,686,260
티티알2 (디자인숍)	5,526,874	967,909	공차 (카페)	10,375,127	3,575,543
피니셔클럽1 (디자인숍)	6,688,617	909,188	오타르 (카페)	3,553,812	817,124
피니셔클럽2 (디자인숍)	5,497,085	879,827	이즈피엠피 (어린이놀이터)	60,660,522	21,945,924
합 계	161,439,168	38,295,882			-

- '21.10월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로, DDP 임차 소상공인 추가 입점, 계약 취소 등으로 감면 대상자(업체) 및 감면액 변동 가능
- '티티알', '피니셔클럽' 매장의 경우 동일 상호명, 동일 업주가 DDP 내 추가 임차('21.6월)
- '이즈피엠피'는 '중기업'에 해당하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거쳐 4차 임대료 감면 지원 대상에 포함됨

다. 예산조치 : 市 예비비 사용

라. 합의 : 예산담당관 예비비 사용 협조

5. 검토의견

가. 동의안 개요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동의안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에 앞서 코로나19 피해 DDP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을 위한 출연 여부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것임.

나.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시유재산 및 시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가 등에 대해 임대료와 공용 관리비를 감면해 주고 있음.
- DDP는 설립시부터 재정자립 수준을 100%로 설정하여 현재까지 자체수입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관 및 임대수입이 감소하였고, 자체수입분 충당을 위하여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재단예비비 23억 7천만원과 25억 8천6백만원 전액을 소진하였음.

이에 서울시는 DDP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임대료 및 공용관리비 감면분을 시예비비로 사용해 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므로 본 출연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재산관리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

제10조(관리비 부담 및 집행) DDP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단이 수탁재산을 활용하여 발생시키는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시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다. 출연 규모의 적정성

- 이번 4차 감면은 2021년 7월부터 12월 사이 DDP에 입점한 업체가 대상이며, '21년 10월 기준 10개 업체에 임대료 1억 6천1백만원과 관리비 3천8백만원, 총 2억원이 지원될 예정임.

(단위 : 천원)

감면 대상	감면 임대료(A) (사용료50%)	감면 관리비(B)	총액(C) (C=A+B)
10개소	161,440	38,296	199,736

※ 감면대상 업체

- 1)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매출기준에 부합¹⁾하고 피해사실 입증 가능한 경우
 - 소기업 : 소매업 등 평균매출 50억 이하, 음식점업 등 평균매출 10억 이하
 - 소상공인 : 소기업 기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명 미만, 그 외 업종 : 5명 미만)
- 2) “다중이용시설” 등의 수익판매시설로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앞선 세 차례의 감면 중 1차 감면대상은 25개 업체, 5억 2천 6백만원이었고, 이후 감면 대상은 업체와 금액 모두 급감하였는데, 이는 디자인장터 공간에 대한 계약이 제3자 전대에 해당한다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처분통보에 따라 계약상대자인 (주)GS리테일과의 계약을 조기 종료하기 위해 입점 업체를 줄여나갔기 때문임.²⁾

1) 소매업 평균매출액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10억원 이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2) 기준 계약은 '22.3월까지였으나 '21.7월 계약을 종료 후, 직영임대형태로 전환하였음.

〈DDP 임대료·공용관리비 감면 현황〉

1차	2차	3차	4차(예정)
25개소 525,880천원	16개소 171,507천원	14개소 177,765천원	10개소 199,736천원

〈제4차 임차료·공용관리비 감면 세부현황(안)〉

(단위 : 원)

연번	업체명	임차료 감면액	관리비 감면액
1	노태그(디자인숍)	7,751,830	12,24,194
2	티티알1(디자인숍)	9,974,495	1,020,162
3	티티알2(디자인숍)	5,526,874	967,909
4	피니셔클럽1(디자인숍)	6,688,617	909,188
5	피니셔클럽2(디자인숍)	5,497,085	879,827
6	카페드페소니아(카페)	39,345,753	4,269,751
7	롤링핀(카페)	12,065,053	2,686,260
8	공차(카페)	10,375,127	3,575,543
9	오타르(카페)	3,553,812	817,124
10	이즈피엠피(어린이놀이터)	60,660,522	21,945,924
총계		161,439,168	38,295,882
			199,735,050

- 1) '21.10월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로, DDP 임차 소상공인 추가 입점, 계약 취소 등으로 감면 대상자(업체) 및 감면액 변동 가능
- 2) '티티알', '피니셔클럽' 매장의 경우 동일 상호명, 동일 업주가 DDP 내 추가 임차('21.6월)
- 3) '이즈피엠피'는 '중기업'에 해당하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거쳐 4차 임대료 감면 지원 대상에 포함됨

- 전체 공간에 대한 임대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공실률이 임대 수입의 감소로 직결되는 만큼 효율적인 공간운영을 위한 계획수립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임.